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재난 대응 강화를 위하여 산림청 산림보호국에 산림재난통제관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을 산림교육원에서 산림청으로 재배정하고, 산림청에 임업직불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목재이용 활성화 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산림 일자리 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채석단지 지정·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1)을 각각 증원하며, 산림교육원에 정원 1명(4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3급 또는 4급 1명)하고, 산림교육기획 총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4급 또는 5급 1명)을 증원하며, 지방산림청에 임업직불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명(6급 5명, 7급 5명)을 증원하고, 산림항공본부에 산불진화를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정원 31명(6급 2명, 7급 9명, 8급 12명, 9급 8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임업직불제 정책 등 산림청 현안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산림청의 정원 1명(8급 1명), 국립산림과학원의 정원 1명(6급 1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정원 3명(5급 3명)을 산림청으로 각각 재배정하되 정원 1명(5급 1명)을 전문경력관(가군)으로 전환하고, 산림산업정책국장이 분장하던 산림일자리 정책 등의 업무를 산림복지국장이, 산림복지국장이 분장하던 도시숲·정원·산림경관 등의 업무를 산림보호국장이 각각 분장하도록 일부 조정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

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산림청의 정원 3명(6급 1명, 7급 1명, 9급 1명)과 지방산림청의 정원 10명(6급 4명, 7급 1명, 8급 2명, 9급 3명), 산림항공본부의 정원 1명(7급 1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1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산림과학원에 산림분야 탄소중립 정책 연구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사 2명), 노사협력 대응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되 정원 1명(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충원하고,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숲속 야영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8급 1명)을 증원하며,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의 정원 1명(연구관 1명), 국립수목원의 정원 2명(9급 2명)을 각각 감축하고, 본청 현안업무 수행을 위하여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정원 4명(5급 3명, 6급 1명)을 산림청으로 재배정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1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산림사범 대응 강화를 위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정원 1명(8급 1명)을 지방산림청으로 재배정하고, 국립산림과학원의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하여 고위직공무원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임업연구관 정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2. 00. ~ 12.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산림정책과·산림자원과·목재산업과·사유림경영소득과·국유림경영과 및 산림일자리창업팀을”을 “산림정책과·산림자원과·목재산업과·사유림경영소득과 및 국유림경영과를”로 하고, “보하고, 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으로 보한다”를 “보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2항 중 “산림복지정책과·산림휴양등산과·산림교육치유과·도시숲경관과·산지정책과 및 정원팀”을 “산림복지정책과·산림휴양등산과·산림교육치유과·산지정책과 및 산림일자리창업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림사업 관련 일자리창출의 총괄 및 조정·점검
2. 산림분야 창업 지원
3. 산림일자리사업에 대한 다른 부처와의 정책 조정
4. 산림기술의 개발·보급 및 지도
5. 산림 관련 국가기술자격 및 민간자격 관리
6. 산림기술진흥계획의 수립·시행

7. 산림기술자,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기술용역업의 육성·관리

8. 임업기능인·기능인영립단의 육성·관리

9. 산림 분야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관한 사항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제4항,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림보호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산림재난통제관으로 하며, 산림재난통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산림재난통제관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10호부터 제15호까지, 제19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④ 산림보호국에 산림환경보호과·산불방지과·산사태방지과·산림병해충방제과·산림생태복원과·도시숲경관과 및 정원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⑩ 도시숲경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지역의 산림 및 녹지의 조성·관리

2. 도시숲등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3. 산림경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도·감독

4. 무궁화 증식·보급 및 관리
5.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지도·감독
6. 마을숲, 학교숲 등 생활숲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⑪ 정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원(庭園)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국가정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방·민간정원의 육성·지원
3. 정원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정원 분야 실태조사·분석
5. 정원 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6. 정원 기술 육성에 필요한 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
7. 정원 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 과장”을 “교육기획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으로, 재해방지교육과장”으로 한다.

① 산림교육원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23조의2의 제목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을 “산림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311”을 “321”로 하고, 일반직 계 “306”을 “316”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6”을 “7”로, 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67”을 “71”로, 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63”을 “65”로, 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43”을 “44”로, 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22”를 “24”로, 사무운영서기보 “2”를 “1”로 하고, 전문경력관 가군(비상계획 담당) 1 다음에 “전문경력관 가군(온라인홍보 담당) 1”을 신설한다.

별표 3의2 중 총계 “323”을 “333”으로 하고, 일반직 계 “318”을 “328”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6”을 “7”로, 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68”을 “72”로, 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64”를 “66”으로, 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48”을 “49”로, 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24”를 “26”으로, 사무운영서기보 “2”를 “1”로 하고, 전문경력관 가군(비상계획 담당) 1 다음에 “전문경력관 가군(온라인홍보 담당) 1”을 신설한다.

별표 5 일반직 계 31 다음에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을 신설하고, “고위공무원단 1”을 삭제하며,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를 “1”로 하고,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다음에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1”을 신설한다.

별표 6 중 총계 “229”를 “228”로 하고, 일반직 계 “229”를 “228”로 하며, 항공주사보 “16”을 “15”로 한다.

별표 6의2 중 총계 “229”를 “228”로 하고, 일반직 계 “229”를 “228”로 하며, 항공주사보 “16”을 “15”로 한다.

별표 6의3 중 총계 “35”를 “34”로 하고, 일반직 계 “35”를 “34”로 하며, 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3”을 “2”로 한다.

별표 6의4 중 총계 “36”을 “35”로 하고, 일반직 계 “36”을 “35”로 하며, 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4”를 “3”으로 한다.

별표 7 중 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160”을 “161”로 하고, 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116”을 “120”으로 하며, 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179”를 “177”로, 운전서기보 “28”을 “25”로 한다.

별표 7의2 중 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157”을 “158”로 하고, 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115”를 “119”로 하며, 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186”을 “184”로, 운전서기보 “23”을 “20”으로 한다.

별표 8 중 총계 “257”을 “258”로 하고, 일반직 계 “257”을 “258”로 하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업연구관 3”을 삭제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임업연구관 “1”을 “4”로, 4급 이하 “252”를 “253”으로 한다.

별표 8의2 중 총계 “69”를 “67”로 하고, 일반직 계 “69”를 “67”로 하며, 4급 이하 “68”을 “66”으로 한다.

별표 9 중 총계 “104”를 “102”로 하고, 일반직 계 “104”를 “102”로 하며, 5급 이하 “103”을 “101”로 한다.

별표 9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0 중 “2023년 1월 27일”을 “2025년 1월 27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산림청 정원 3

명(6급 1명, 7급 1명, 9급 1명)과 산림청 소속기관의 정원 14명(6급 4명, 7급 2명, 8급 2명, 9급 5명, 연구관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9의2]

산림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3조의2 관련)

조직	정원	평가기간
산림보호국 산림생태복원과	1명 (7급 1명)	2023년 9월 30일까지
산림보호국 산림재난통제관	0명	2025년 9월 30일까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산림산업정책국) ① (생 략)	제7조(산림산업정책국) ① (현행 과 같음)
② <u>산림산업정책국에 산림정책 과 · 산림자원과 · 목재산업과 · 사유림경영소득과 · 국유림경영 과 및 산림일자리창업팀을 두 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 서기 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 고, 팀장은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으로 보한다.</u>	② ----- <u>산림정책과 · 산림자원과 · 목재산업과 · 사 유림경영소득과 및 국유림경영 과를 ----- ----- ----- 보한 다.</u>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⑨ <u>산림일자리창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u><삭 제></u>
1. <u>산림사업 관련 일자리창출의 총괄 및 조정 · 점검</u>	
2. <u>산림분야 창업 지원</u>	
3. <u>산림일자리사업에 대한 다른 부처와의 정책 조정</u>	
4. <u>산림기술의 개발 · 보급 및 지 도</u>	
5. <u>산림 관련 국가기술자격 및 민간자격 관리</u>	
6. <u>산림기술진흥계획의 수립 ·</u>	

시행

7. 산림기술자,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기술용역업의 육성·관리

8. 임업기능인·기능인영립단의

육성·관리

9. 산림 분야 산업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이행에 관한 사항

제8조(산림복지국) ① (생략)

② 산림복지국에 산림복지정책

과·산림휴양등산과·산림교육

치유과·도시숲경관과·산지정

책과 및 정원팀을 두되, 각 과장

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

서기관으로, 팀장은 서기관·기

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임

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 ⑤ (생략)

⑥ 도시숲경관과장은 다음 사항

을 분장한다.

1. 도시지역의 산림 및 녹지의

조성·관리

2. 도시숲등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3. 산림경관 관리계획의 수립·

시행 및 지도·감독

제8조(산림복지국) ① (현행과 같음)

② ----- 산림복지정책

과·산림휴양등산과·산림교육

치유과·산지정책과 및 산림일

자리창업팀-----

-----.

③ ~ ⑤ (현행과 같음)

<삭제>

<u>4. 무궁화 증식·보급 및 관리</u> <u>5.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지도·감독</u> <u>6. 마을숲, 학교숲 등 생활숲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u> ⑦ (생 략) ⑧ 정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u>1. 정원(庭園)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u> <u>2. 국가정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방·민간정원의 육성·지원</u> <u>3. 정원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u> <u>4. 정원 분야 실태조사·분석</u> <u>5. 정원 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u> <u>6. 정원 기술 육성에 필요한 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u> <u>7. 정원 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u> 제9조(산림보호국) ①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⑧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u>1. 산림사업 관련 일자리창출의 총괄 및 조정·점검</u> <u>2. 산림분야 창업 지원</u> <u>3. 산림일자리사업에 대한 다른 부처와의 정책 조정</u> <u>4. 산림기술의 개발·보급 및 지도</u> <u>5. 산림 관련 국가기술자격 및 민간자격 관리</u> <u>6. 산림기술진흥계획의 수립·시행</u> <u>7. 산림기술자,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기술용역업의 육성·관리</u> <u>8. 임업기능인·기능인영립단의 육성·관리</u> <u>9. 산림 분야 산업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이행에 관한 사항</u> 제9조(산림보호국) ① (현행과 같
---	---

② 산림보호국에 산림환경보호과 · 산불방지과 · 산사태방지과 · 산림병해충방제과 및 산림생태복원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신 설>

<신 설>

③ ~ ⑧ (생략)

<신 설>

음)

②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림보호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산림재난통제관으로 하며, 산림재난통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산림재난통제관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10호부터 제15호까지, 제19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④ 산림보호국에 산림환경보호과 · 산불방지과 · 산사태방지과 · 산림병해충방제과 · 산림생태복원과 · 도시숲경관과 및 정원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팀장은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⑤ ~ ⑨ (현행 제3항부터 제8항까지와 같음)

⑩ 도시숲경관과장은 다음 사항

<신 설>

을 분장한다.

1. 도시지역의 산림 및 녹지의
구성·관리

2. 도시숲등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3. 산림경관 관리계획의 수립·
시행 및 지도·감독

4. 무궁화 증식·보급 및 관리

5.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의 수
립 및 지도·감독

6. 마을숲, 학교숲 등 생활숲 조
성 지원에 관한 사항

⑪ 정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
장한다.

1. 정원(庭園)진흥기본계획의 수
립 및 시행

2. 국가정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방·민간정원의 육성·
지원

3. 정원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에 관한 사항

4. 정원 분야 실태조사·분석

5. 정원 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6. 정원 기술 육성에 필요한 산
업 지원에 관한 사항

제11조(산림교육원) ①<u>산림교육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u> ②<u>산림교육원에 교육기획과 및 재해방지교육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u> ③·④ (생략) 제23조의2(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u>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 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9의2와 같다.</u>	7. 정원 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11조(산림교육원) ① <u>산림교육원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u> ②----- ----- <u>교육기획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으로, 재해방지교육과장---</u> ③·④ (현행과 같음) 제23조의2(평가대상 조직) <u>산림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u> ----- ----- --.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3]

산림청 공무원 정원표(제21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311</u>	<u>321</u>	+10
·	·	·	
·	·	·	
일반직 계	<u>306</u>	<u>316</u>	+10
고위공무원단	<u>6</u>	<u>7</u>	+1
·	·	·	
·	·	·	
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u>67</u>	<u>71</u>	+4
·	·	·	
·	·	·	
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u>63</u>	<u>65</u>	+2
·	·	·	
·	·	·	
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u>43</u>	<u>44</u>	+1
·	·	·	
·	·	·	
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u>22</u>	<u>24</u>	+2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2</u>	<u>1</u>	-1
전문경력관 가군(비상계획 담당)	1		
<u>전문경력관 가군(온라인홍 보 담당)</u>	<u><신 설></u>	<u>1</u>	+1
•	•	•	
•	•	•	

[별표 3의2]

산림청 공무원 정원표(제21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323</u>	<u>333</u>	+10
•	•	•	
•	•	•	
일반직 계	<u>318</u>	<u>328</u>	+10
고위공무원단	<u>6</u>	<u>7</u>	+1
•	•	•	
•	•	•	
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u>68</u>	<u>72</u>	+4
•	•	•	
•	•	•	
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u>64</u>	<u>66</u>	+2
•	•	•	
•	•	•	
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u>48</u>	<u>49</u>	+1
•	•	•	
•	•	•	
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u>24</u>	<u>26</u>	+2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2</u>	<u>1</u>	-1
전문경력관 가군(비상계획 담당)	1		
<u>전문경력관 가군(온라인홍 보 담당)</u>	<u><신 설></u>	<u>1</u>	+1
•	•	•	
•	•	•	

[별표 5]

산림교육원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일반직 계	· 31	·	
· <u>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u>	<u><신 설></u>	<u>1</u>	+1
· <u>고위공무원단</u>	<u>1</u>	<u><삭 제></u>	-1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u>2</u>	<u>1</u>	-1
· <u>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u>	<u><신 설></u>	<u>1</u>	+1
·	·	·	
·	·	·	

[별표 6]

산림항공본부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3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229</u>	<u>228</u>	-1
일반직 계	<u>229</u>	<u>228</u>	-1
·	·	·	
·	·	·	
항공주사보	<u>16</u>	<u>15</u>	-1
·	·	·	
·	·	·	

[별표 6의2]

산림항공본부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3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29</u>	<u>228</u>	-1
일반직 계	<u>229</u>	<u>228</u>	-1
·	·	·	
·	·	·	
항공주사보	<u>16</u>	<u>15</u>	-1
·	·	·	
·	·	·	

[별표 6의3]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4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35</u>	<u>34</u>	-1
일반직 계	<u>35</u>	<u>34</u>	-1
·	·	·	
·	·	·	
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u>3</u>	<u>2</u>	-1
·	·	·	
·	·	·	

[별표 6의4]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4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36</u>	<u>35</u>	-1
일반직 계	<u>36</u>	<u>35</u>	-1
·	·	·	
·	·	·	
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u>4</u>	<u>3</u>	-1
·	·	·	
·	·	·	

[별표 7]

지방산림청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5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u>160</u>	<u>161</u>	+1
•	•	•	
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u>116</u>	<u>120</u>	+4
•	•	•	
•	•	•	
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u>179</u>	<u>177</u>	-2
•	•	•	
•	•	•	
운전서기보	<u>28</u>	<u>25</u>	-3
•	•	•	
•	•	•	

[별표 7의2]

지방산림청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5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u>157</u>	<u>158</u>	+1
•	•	•	
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u>115</u>	<u>119</u>	+4
•	•	•	
•	•	•	
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u>186</u>	<u>184</u>	-2
•	•	•	
•	•	•	
운전서기보	<u>23</u>	<u>20</u>	-3
•	•	•	
•	•	•	

[별표 8]

국립산림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6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257</u>	<u>258</u>	+1
일반직 계	<u>257</u>	<u>258</u>	+1
·	·	·	
<u>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u> <u>임업연구관</u>	<u>3</u>	<u><삭 제></u>	-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임업연구관	<u>1</u>	<u>4</u>	+3
4급 이하	<u>252</u>	<u>253</u>	+1

[별표 8의2]

국립수목원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7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69</u>	<u>67</u>	-2
일반직 계	<u>69</u>	<u>67</u>	-2
·	·	·	
4급 이하	<u>68</u>	<u>66</u>	-2

[별표 9]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8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04</u>	<u>102</u>	-2
일반직 계	<u>104</u>	<u>102</u>	-2
·	·	·	
5급 이하	<u>103</u>	<u>101</u>	-2